

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02. 7. 15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02. 7. 15

다. 상정일자: 제104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(2002. 7. 30)상정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조치승 총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우리구의 괴정2동 및 장림1동사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“괴정제2동” 위치를 “괴정동 354-22” 로하며, “장림제1동” 위치 “장림동 1140” 으로 함.

3. 관련법령 및 조례

가. 지방자치법 제6조(사무소의 소재지)

나. 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 제2조(소재지)

4. 전문위원검토의견

-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괴정2동 및 장림1동사의 신축이전에 따른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서

- 괴정2동사는 1,032,000천원(토지매입비 581,000천원, 신축공사비 451,000천원)의 예산을 투입 2002. 1. 31 착공하여 2002. 5. 20일 준공 하였으며, 지난 6. 5일이전개소 하였고
- 또한 장림1동사도 545,000천원(토지:매립지, 신축공사비 545,000천원)의 예산을 투입 2001. 12. 21 착공하여 2002. 5. 20 준공하였으며, 지난 6. 4일이전개소 하였으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답변요지: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